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 협회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개정 역사와 주요 골자를 소개합니다. 이 시리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사〉(2015, 고용노동부)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

정리 대외홍보팀

산업안전보건법의 제·개정 요지(15)

제7조(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제7조 삭제 〈2009. 10. 9.〉

제정('81. 12. 31.)

제6조(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①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직 ·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차 개정('90. 1. 13.)

개정사유

'위원회'를 '정책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산업안전 · 보건업무를 심의 · 조정하도록 문구를 정리

개정내용

제1항 : 산업재해예방에 →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 · 보건업무에 / 심의 → 종합적으로 심의 / 위원회 → 정책심의위원회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직 ·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 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 기능 · 운영 기타

제24차 개정('09. 2. 6.)

개정사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개정내용

제1항 : 각호의 규정에 의한 → 각 호에 따른 / 관련되는 주요정책 → 관련된 주요 정책

제2항 : 기타 → 및 그밖에

제25차 개정('09. 10. 9.)

개정사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

개정내용

삭제

제8조(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공표.)

> 제8조(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공표)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 ·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차 개정('90. 1. 13.)시 신설

신설사유

재해예방사업에 관련하여 기본계획이 없어 매년 답습적인 안전보건 사업을 시행

– 사업간의 연계성 결여로 인한 안전보건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

– 산업재해예방에 관련하여 중 ·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공표토록 함

신설내용

제8조(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 공표)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 ·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4차 개정('09. 2. 6.)

개정사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개정내용

제1항 : 산업재해예방 → 산업재해 예방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산업재해예방계획 →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산업재해 예방계획 / 변경하고자 하는 때 → 변경하려는 경우

제25차 개정('09. 10. 9.)

개정사유

제7조 개정사유 참조

개정내용

제2항 : 정책심의위원회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제28차 개정('10. 6. 4.)

개정사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함에 따라 부처명칭 등 관계 조문의 용어 정비

개정내용

제1항 : 노동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제2항 : 노동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제9조(협조의 요청 등)

제9조(협조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고용노동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 · 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정('81. 12. 31.)

제9조(협조의 요청 등)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 사업주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